

“전두환주징법 제3자 재산압류는 합헌”

헌법재판소 선고… “불법재산 환수 입법목적 중대 의미”

이선애·이종석·이영진 반대 “검사 자의적 판단시 피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전두환 주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른바 ‘전두환 주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재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불법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압류당한 박모씨(57)

판단만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전 전 대통령 불법재산 환수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3년 신설됐다.

박씨는 2011년 4월 전 전 대통령 큰아들 전재국씨(61)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씨(64)에게 27억원을 주고 이 땅 일부를 샀다.

검찰은 ‘전두환 주징법’에 따라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제3자 상대로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2013년 7월 박씨 부동산도 압류했다.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샀다”며 서울고법에 재판에 관한 이의신청을 냈다. 또 재판부에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

당시 이의신청 재판에서 박씨는 불법재산인 사실을 모르고 땅을 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박씨가 전 전 대통령 아들이 제3자 명의로 해당 땅을 사들인 정황을 알았다

고 보고 이를 압류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이 헌법상 무죄주정 원칙,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국민 재산권,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현재

판단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현재는 “해당 조항에 따른 추징 절행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접성이 요구된다”며 “추징판결 절행에 앞서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적법절차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밝혔다.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특정공무원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 별권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해당 조항 입법목적은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라며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집행 용이함이나 밀행성 요구가 사전고지나 청문절차 부재를 정당화하는 방과 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이들은 “범죄 뒤 그 정황을 알지 못한 채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불과해 제3자 추징을 당할 경우가 아닌데도 검사가 요건을 갖췄다고 자의적 판단해 추징 절행을 한 경우”엔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윤호 기자

● 단신 ●

‘짬뽕에 주꾸미 7마리 넣어’ 요리사 해고 무효

식자재를 아껴 쓸 것을 지시했는데도 해물왕짬뽕에 주꾸미를 많이 넣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중국집 주방 요리사의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희)는 최근 A씨가 광주의 한 중식당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해고로 인해 10개월간 받지 못한 급여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B씨가 운영하는 광주의 한 중식당에서 주방 요리사로 고용돼 근무해 왔다.

B씨는 같은해 12월 A씨에게 “매출은 줄어드는데 해물 재료비가 오히려 더 많아졌다”며 식자재를 아껴쓸 것을 지시했다.

지시한지 하루만에 B씨는 A씨에게 “해물왕짬뽕에 주꾸미 7마리가 나왔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계좌번호 말해라”라는 내용의 해고 의사표시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주꾸미를 정해진 수를 세어서 넣기 때문에 어쩌다 한 마리가 떨어 들어갈 수 있어도 B씨의 말과 같이 지시를 어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하고 구제신청을 했고 전남지노위는 2019년 2월 “부당해고가 인정되니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됐다.

무변론 판결은 법률 피고가 답변서에 제출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때로 항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딸 만나고 싶다” 전처 흥기 살해한 50대 검거

자녀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50대 남성이 귀가하는 이혼한 전처를 흥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도주했다가 5시간만에 검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5시40분쯤 부산 남구 갑동의 한 차킨가게 앞 도로에서 A씨(50대 남성)가 귀가중이던 전처 B씨(50대 여성)의 복부 등을 흥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흥기를 휘두른 것 같다고 경찰은 전했다.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날 오후 10시40분쯤 부산의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사건 발생 5시간만이었다.

음주 30대 아우디 운전자, 차량 2대 충돌

27일 오전 7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경인아라뱃길 인근 왕복 2차로에서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 A(35)씨와 K5 승용차 운전자 B(50)씨 그리고 동승자 C(57)씨 등 3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아우디 운전자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차선을 달리던 K5와 모닝 차량을 잇따라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로 나왔다”며 “중앙선을 침범해 K5와 정면충돌한 후 이어 모닝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조사를 벌인 뒤 교통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무안 남악신도시 불법 주정차 극성 “이유 있었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6대 고장난 채 방치

설치 3~4년만에 멈춰…무안군 “노후화돼서”



전남도청 등이 들어선 무안군 남악신도시가 불법 주정차로 혼잡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고정식 단속카메라 6대가 고장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무안군 남악신도시 일대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테 주·정차 단속카메라 여려 대가 수년째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4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17곳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하지만 남악신도시에서만 신한은행사거리와 남악우체국사거리, 오룡휴먼시아, 전남전문건설회관, 에드가 5차의 고정카메라 6대가 2018년과 지난해 사이 작동이 멈췄다.

특히 무안군은 이들 단속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방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3~4년전 설치된 단속카메라의 고장 원인에 대해서도 ‘노후화’로 밝히고 있어, 더욱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남도청 등 주요 관공서와 오피스 건물들이 밀집된 남악신도시는 상시 주차난을 겪고 있다.

무안군의 2017~2019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에서도 남악신도시 일대는 1만 5000여건이 단속대 무안군 전체 단속 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고장난 고정식 단속카메리들이 정상 작동됐으면 훨씬 많은 단속이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단속카메라 설치업체의 보증 기간이 2년이면 만료돼 2018년부터 유지보수 예산을 세워야 했으나 하지 못했다”면서 “연간 2200만원 정도의 유지보수 예산보다는 고장난 카메라를 교체하는 것이 비용 절감면에서 더 나을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정화조 청소 깨끗한 물, 자연과 함께 하는 기업

노령미화사 061)393-3200
금성미화사 061)394-3200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환경법에 의해 청소해야 되며, 미 청소시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